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1. 22 선고 2024가단242932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다래

담당변호사 구태균, 장달원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22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,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, 피고 B는 같은 건물을 인도하라.

나. 피고들은 광주시 E 대 1,538㎡ 중 별지 도면 ①, ②, ③, ④, ①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00㎡를 인도하라.

다. 피고들은 각자 7,995,840원 및 이에 대한 2024. 11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. 11. 1.부터 위 가, 나항 기재 의무 이행완료일까지 월 1,332,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화연

별지